

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심화 및 대학과정 이수 기준

2014.05.20

교육	이수 기준
온라인 교육	온라인 교육 이수 기준은 필수 과제 제출 여부와 기타 기준에 의거한다. 1. 필수 과제 제출 1.1 1년 단위 과정 중 총 2학기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의 필수 과제는 모두 제출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미제출 시 퇴원 조치한다. (단, 필수과제 제출 기한 미준수[붙임1]는 한 학기에 <u>2회까지</u> 허용한다.) 가.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교육원에서 제시한 연장 기한(1,2차 연장) 내에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. 나. 특정 필수 과제의 경우 교육원 내부의 평가를 거쳐 내용의 충실성이 미흡 하다[붙임2]고 판단될 경우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원이 제시한 기한 내(1, 2차 연장 기한)에 수정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할 경우 과제 미제출로 간주한다. - 단, 온라인 교육(필수 과제 제출)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원에 즉시 알림으로써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 다. 재제출 요구에 따라 과제를 재 수행하였으나 과제가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심화과정 교육을 수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원 조치한다. 2. 기타 - 온라인 예절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([붙임3] 해당) 감점 및 퇴원 조치한다.
오프라인 교육	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준은 집중교육 참가 여부와 기타 기준에 의거한다. 1. 집중교육 참가 1.1 1년 단위 과정 중 총 2회의 집중교육에 모두 참가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불참 시에는 퇴원 조치한다.

-
- 단,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불참을 허용하되, 교육원에서 해당 교육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불참 허용 범위(일정 및 시간)를 준수한다.

가.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나. 사망 및 탈상에 해당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[붙임5]

다.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
라.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입시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
-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.

- 위의 "가", "나", "다", "라" 항에 해당하는 경우

- 1) 교육원에 알려야 하며 해당 학기 교육 이수 전에 불참 사유서와 함께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(의사 진단서, 수험표 등)를 제출해야 한다.
- 2)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학기 교육 이수 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원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정하도록 한다.

1.2 이 외에 고의로 불참한 경우,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참할 경우는 퇴원 조치한다.

2. 기타

가. 오프라인 집중교육의 참가비를 미납할 경우 퇴원 조치한다.

나. 오프라인 교육생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([붙임4] 항목 해당)경고 및 퇴원 조치한다.

[붙임 1]

※ 과제 제출 기한 미준수 기준

- 과제 제출 기한 미준수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, 이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제출 기한 미준수로 간주한다.
- 1) 제출 마감 일 이후 과제를 제출 하는 경우
- 2) 필수 작성 항목을 누락하거나, 해당 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
- 3) 과제를 올바르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(다른 경로, 다른 파일 업로드)
- 4) 과제를 베낄 경우(보고서, 논문, 다른 교육생의 과제 등)

[붙임 2]

※ 내용의 충실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준

- 필수 작성 항목을 해당 내용에 맞게 모두 작성하였으나, 항목별 내용이 부실한 경우

[붙임 3]

※ 온라인 예절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- 1) 게시판의 용도에 부적합한 글을 게시함
- 2) 특정 사이트 가입(교육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설하지 않은 사이트)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함
- 3) 회원 간 욕설 및 비방(특정 회원 지칭) 글을 게시함

[붙임 4]

※ 오프라인 교육생활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구분	내용	처리
청소 및 정리 상태 불량	공동 사용 장소 개인사물(세탁물 등) 방치	경고 2회 받은 교육생은 퇴원 조치됨
	간식 후 뒷정리 불량	
	퇴실 처리 불이행(청소, 비밀번호 초기화 등)	
소란 행위	취침시간이후 이동, 타인침실에서 소란 및 취침	
	실내 또는 독서실 잡담 및 소란	
	도박, 흡연, 음주 행위	
	교우 간 폭행	
시설물 및	인화물질 위험물질 침실 반입자	

소지품 휴대 위반	공고물 및 시설물 파손	
	수업 중 휴대폰 사용(통화 및 문자 등)	
양심 불량	타인의 물건 허락 없이 손대는 자	
공중도덕 및 기본생활태도 불량	힘오스럽거나 야한 복장 용모 행동	
	남녀관계 불미스러움	
	외부인을 동행 시킨 자	
일과표 미 준수	무단 외박·외출자	
	단체행동 이탈 (10분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)	
	지각	
	점호 불이행	
기타	교칙, 교사지시 불이행(위반사실 불인정)	

[붙임 5]

※ 사망 및 탈상

구분	대상	일수
사망 및 탈상	부모 및 (외)조부모	3
	(외)조부모를 제외한 부모의 직계존속	3
	부모의 형제.자매 및 그의 배우자	3
	부모의 백숙부모	3
	형제.자매 및 그의 배우자	3